

#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1017
------------------	------

발의연월일 : 2014. 12. 18.  
 발의자 : 김성택 의원 등 8인  
 (공동발의)

## 1. 주 문

인권은 민족, 국가, 인종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이다. 이러한 기본 원리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에서 정권 차원의 반인도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북한 인권 탄압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지난 11월 19일 새벽 유엔 3위원회에서 유엔회원국 111개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것은 북한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전 세계가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24일 유엔기조연설에서 “북한과 국제사회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전 세계에 북한 인권 개선을 호소한 데 적극 동감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한다.

지금도 북한의 인권탄압과 유린은 진행중이다.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유린이 북한 지배체계의 세습 및 유지를 위해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이며, 이를 위해 장기간 극단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인지해왔다. 북한의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

해 유엔은 2003년부터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으며,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북한과 한민족이면서 북한의 인권탄압 및 유린에 가장 가슴 아파해야 할 대한민국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국회에서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이다.

이에 달성군의회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세계인권선언에서 부여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 그리고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 내용에 기반하여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관련 기관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의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2014년 12월 19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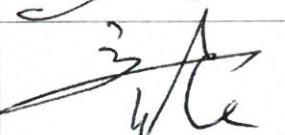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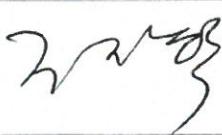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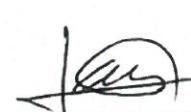
## 2. 제안이유

- 인권은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보편적 권리이자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인권탄압과 유린은  
국제사회가 경악할 만큼 심각한 상태이다.
- 이러한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으로서  
더욱 가슴 아파 해야 할 대한민국은  
북한 인권 관련 법률 제정을 아직도 미루고 있다.
- 이는 우리가 북한 주민을 인간 그 자체가 아닌  
우리와 대립된 정치적 상대로만 인식하기 때문이다.
- 이에, 우리는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북한 사회가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기를 기대하며,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 3. 참고사항

- 건의문 배부 : 국회의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대구달성군협의회 회장

## 발의자 서명부

의원명	서명	날인
채명지	채명지	
하중환	하중환	
하용하	하용하	
구자학	구자학	
김상영	김상영	
김성택	김성택	
엄운탁	엄운탁	
신영희	신영희	